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한

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사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신규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‘15~’21.3월에 신설·강화된 규제 중 새롭게 일몰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신규 설정하려는 것임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설정을 위한 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농약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”로,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로 하고, 제32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: 2022년 1월 1일

20. 제22조의6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: 2022년 1월 1일

제2조(「종자산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”로,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로 하고, 제47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: 2022년 1월 1일

제3조(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

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”로,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로 하고, 제91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제5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: 2022년 1월 1일

제4조(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”로, “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”로 하고, 제65조 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제51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: 2022년 1월 1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제32조(규제의 재검토)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-----</u> ----- <u>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18. (생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9.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: 2022년 1월 1일</u>
<u><신설></u>	<u>20. 제22조의6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: 2022년 1월 1일</u>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----- -----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8.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: 2022년 1월 1일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
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1조(규제의 재검토)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1조(규제의 재검토)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</u> ----- ----- ----- <u>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7. (현행과 같음) <u>18. 제5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: 2022년 1월 1일</u>
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5조(규제의 재검토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1. ~ 17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5조(규제의 재검토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-----</u> ----- ----- 매 <u>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</u> <u>까지를 말한다)마다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7. (현행과 같음) <u>18. 제51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</u> <u>업자 등에 대한 처분: 2022년 1월 1일</u>